

[붙임 3-1 : 합의서 및 공증 - 강북 ①]

합 의 서

- 공 사 명 : 강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공사기간 : 2010.02.18. ~ 2014.10.31
- 공사금액 : 55,368,948,800원정
- 건 명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반환 약정
- 발 주 자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계 약 자 : 대보건설(주) 대표 남관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쌍방은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여 합의하였으므로 계약자는 위 합의금액 외에 추가로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합의현황

구 분	계약금액요청금액	합의금액	비 고
금액(단위:원)	1,166,451,000	783,927,000	부가세 포함

나. 위 합의금액은 공사기간 2010.10.18.~2012.12.18.에서 2010.10.18.~2014.10.31.로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금액으로 당초 대표사인 ㈜국제건설이 공동수업업체에서 탈퇴하기 전 공동으로 수행한 기간(2012.12.19.~2013.12.27.)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대보건설(주)는 ㈜국제건설이 기존에 공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합의금 내에서 내부 약정비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국제건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대보건설(주)이 부담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

다. 단 현재 우리시에서 소송 중인(도시기반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고등법원 2013나 2020067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4. 11. 5. 제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여 추가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합의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받고 이러한 사항을 대보건설(주) 부담으로 공증한다.

2014. 11.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남 원 준



대보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 관 우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붙임 3-1 : 합의서 및 공증 - 강북 ②]



서울 중진구 구의동 243-71
(대상빌딩 1층)
[별지 제33호서식]

공증인 신문식 사무소

(전화) 02-2727
(팩스) 02-27156

등부 2014년 제 5192 호

인 증 서

210mm X 297mm
보관용지(1종) 70g/m²

[붙임 3-1 : 합의서 및 공증 - 강북 ③]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71
 (대성빌딩 1층)
 [법지 제35호서식]

공증인 신문식 사무소

(전화) 02-2927
 (팩스) 02-2955

등부 2014 년	제 5192호
인 증	
위 합의서-----	에 기재된
(합의인) 대보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관우) -----	의 관 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 이 본인의 짓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	

2014년 11월 25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중한다.	
공증인 신문식 사무소	
소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71 (대성빌딩 1층)	
공증인	신 문 식 (인)

210mm X 297mm
 보편용지(1종) 70g/m²

[붙임 3-2 : 합의서 및 공증 - 암사]

합 의 서

- 공 사 명 : 암사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공사기간 : 2009.10.06. ~ 2014.12.15
- 공사금액 : 62,335,800,000원정
- 건 명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반환 약정
- 발 주 자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계 약 자 : 고려개발(주) 대표 김종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금액 조정에 대하여 쌍방은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여 합의하였으므로 계약자는 위 합의 금액 외에 추가로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금 내역

구분	요청금액	합의금액	비 고
금액(단위:원)	1,573,750,000	1,100,000,000	부가세 포함

나. 합의 금액은 총액 합의금 임.

다. 단 현재 우리시에서 소송 중인(도시기반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067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4. 11. 5. 제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여 추가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되는 경우, 위 합의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받고 이러한 사항을 고려개발(주) 부담으로 공증한다.

2014. 12.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남 원 준 (인)

고려개발(주)

대표이사 김 종 오 (인)



[붙임 3-3 : 합의서 및 공증 - 구의①]

합 의 서

- 공 사 명 :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최초공사기간 : 2009.11.23. ~ 2013.01.15.
- 변경공사기간 : 2009.11.23. ~ 2015.04.20.
- 도급금액 : 178,371,600,000원정
- 건 명 : 공사기간 연장(27개월)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반환 약정
- 발 주 자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계약상대자 : (주)대우건설 대표 박영식 외 2개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금액 조정에 대하여 쌍방은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여 합의하였으므로 계약자는 아래 합의 금액 외에 추가로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금 내역 (단위 : 원)

구 분	요청 금액	합의 금액	비 고
금 액	3,215,300,000 (착잡비 청구금액 제외)	1,900,000,000	부가세 포함

나. 단,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소송(서울 고등법원 2013나2020067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4. 11. 5. 제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여 추가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되는 경우, 위 합의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받고 이러한 사항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증한다.

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금은 2014년 내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변경을 완료하여 지급한다.

라. 공사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추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계약금액 조정은 별도 협의한다.

2014. 12. 1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남 원 준 (인)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박 영 식 (인)

두산건설(주) 대표이사 양 희 선 (인)

이화공영(주) 대표이사 최 삼 규 (인)

[붙임 3-3 : 합의서 및 공증 - 구의②]

인감신고서

사 용 인 감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1가) 주 식 회 사 대 우 건 설 대 표 이 사 박 영 식 580108-1143729
------------------	-----------------------------------------------------------------------------------	------------------------------------------------------------------------------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 시 에서 집행하는 아 래 공사의 합의서 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 임은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 사 명 :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014. 12 .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1가)
 주 식 회 사 대 우 건 설
 대 표 이 사 박 영 식
 580108-1143729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귀하

일련번호	534
------	-----

[붙임 3-3 : 합의서 및 공증 - 구의③]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2137895



상 호 : 주식회사 대우건설
본 평 . 서울특별시 중도구 새문안로 75(인문도1가)
대표이사 박영식
(580108-1143729)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200원 영수함.

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BA0Y-QT0T-LFN8

70101500391877230112411103201101C7CFBCB1C0DA19650525 200

- 1/1 -



534 006743